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691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750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0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691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 7. 12 선고 2002나5443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부산지법 2002. 7. 12. 선고 2002나5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CACA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권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당초 보증금액의 3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CACA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CACA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CACA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CACA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40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 판시 담보취득 특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위 은행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고 하여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보증책임 면책은, 중소기업은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이 된 것으로서, 설령 피고도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특약사항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약관조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피고측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00다300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면책판단에 덧붙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황에 충당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대출금 150,000,000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이미 채무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지급금 69,031,56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한 이 사건에서, 설령 위 대지급금에의 충당이 기존채권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5314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만, 중소기업은행의 위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전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 손지열(주심)